

전라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85호

' 21.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수의 7급 및 수의연구사)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1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수의 7급 및 수의연구사)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6일

전라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제2항(시험의 공고)

2 선발예정인원

○ ' 21. 전라북도 지방공무원(수의 7급 및 수의연구사) 임용시험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 예정 인원	임용기관	시험과목
계			14		
7급	수의	수의	10	전북도 3, 전주 1, 김제 1, 진안 1 임실 1, 부안 3	서류전형(1차)+면접시험(2차) ⇒ 필기시험 없음
연구사	수의연구	수의	4	전북도 4	

3 시험일정 및 시험과목

시험명	원서접수 기 간	원서접수 취소기간	시험방법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력경쟁)	11. 8. ~ 11. 12. (5일간)	-	서류전형 (1차)	-	11.22	11.23.
			면접시험	11.23.	11.29. ~11.30.	12.1.

4 시험 방법

① 서류전형(1차)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②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응시자격 요건

- ### ① 응시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거나 응시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응시연령

직 급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7급 및 연구사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③ 학력 및 자격증·면허증 등 제한(기준일 : 해당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직 급	직 렬	직 류	자격증·면허증 제한
7급	수의	수의	수의사
연구사	수의연구	수의	

④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전국)

6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접수 개요

- 대 상 : 수의 7급, 수의연구(수의)
- 접 수 기 간 : 2021. 11. 8.(월) ~ 11. 12.(금) (09:00~18:00) ※ 점심시간은 제외(12:00~13:00)
- 응시수수료 : 7,000원(7급, 연구사)
 - ※ 응시수수료는 전라북도수입증지를 구입(전북도청 1층 민원봉사실)하여 영수증으로 서류(응시원서 앞면 붙임)를 함께 제출
- 응시원서 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등기)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함

- ▶ 주소 : (우549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총무과 공무원채용팀(2층)
-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063-280-4219)
- ▶ 응시수수료는 우체국 방문 '통상환증서'를 제출서류와 동봉 제출(현금×)

□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 <서식1>, 자필기재) 1부.
 - 응시원서에는 임용예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중복접수 할 수 없음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 해당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이력서(붙임 <서식 2>,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또는 인) 1부.
- 자기소개서(붙임 <서식 3>,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또는 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붙임 <서식 4>, 워드작성 및 자필서명 또는 인) 1부.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원본지참 필수)
- 신분증 사본 1부. (우편접수 시)

7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총무과 공무원채용팀(☎ 063-280-4219, 4218, 22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람